



## I . 머리말

지혜로움과 민첩함을 상징하는 토끼해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가 토끼처럼 껑충 껑충 되살아나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가 빨리 회복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0.2%라는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정부의 과감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2010년에는 6.1%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OECD가 발표한 2011년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약 4.3%의 성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수 추이는 경제상황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0.7% 감소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경제회복에 힘입어 지방세수가 6.0%의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올해 지방세수는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라 전년대비 3.8% 증가에 그쳐 신장율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지방재정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은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난 한해 지방세제 정책추진성과를 되돌아보고, 금년도 지방세 정책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 〈 최근 5년간 지방세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세	435,243	454,797	451,678	478,785	497,198
신장률	5.4	4.5	- 0.7	6.0	3.8

※ 2010년, 2011년은 당초예산 기준

## II. 2010년 주요 성과

지난해 지방세 정책 주요성과는 우선 선진적인 지방세 체계를 확립하였다. 1961년 이후 유지해 온 후진적이고 복잡한 지방세법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전문화하면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하위법령을 개정을 통해 선진화 · 전문화된 지방세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제개선과 아울러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시스템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공하는 위택스시스템을 지방세 3법령 체계에 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운영을 거치는 등 지방세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였고, 지방세 3법령에 대한 세무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

기에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2회에(6.23~6.25, 6.30~7.2) 걸쳐 81명의 시도별 교수요원을 육성한 후 시도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교수요원을 활용 시군구 세무공무원들에게 체계적이며 반복적인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였다.

둘째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지방세수 확충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5년간 지방세 감면액은 2005년 12.8%(8조원)에서 2009년 25%(15조원)로 약 2배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가주도의 비과세·감면급증, 감면의 만성화·기득권화 경향에 기인하며 점차 지방세의 재원조달 기능과 지방재정책임성이 저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감면조례총량제와 법정감면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감면신설을 최소화하고, 감면정비효과를 통해 비과세·감면비율이 2015년 17.3%(13.4조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셋째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이다. 상반기에는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통하여 농촌정착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를 위한 지방세 지원정책도 추진하였다.

하반기에는 통합 취득세 운영과 관련한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자동차, 건설기계에 한해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고, 서민생계형 자동차(화물적재 바닥면적 2m<sup>2</sup>미만 차량)에 대해서 세부담 경감 유지, 주민생활 안정 및 사고예방을 위해 9억이하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노후시설물 교체시 부과되던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개선하였다.

넷째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이다.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관보·공보 등 기존 명단공개 방식을 언론매체에도 공개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세와 같이 과세자료 보유기관(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이 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지방세 과세자료(150~205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세 전

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전자고지 및 자동계좌이체 비율을 25% 까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다섯째로 금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 준비를 완료하였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근거와 통합수납정보센터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시행에 앞서 각 기관간(행안부 위택스 ↔ 통합수납시스템, 통합수납시스템 ↔ 은행간) 연계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간편납부번호 부여방식도 개편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과세자료 정비와 시스템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과 아울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관간 완전한 시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치하였다.

여섯째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 확충이다. 당초 지난해 1월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이양 받아 지방소비세를 도입 운영한 결과 당초예산 2.47조원 대비 총 2.68조원이 배분되어 지역 경제와 지방세수가 연계되는 세수확충 효과를 거두었다.

### 2010년 지방세 주요 입법 추진실적

#### □ 총 16건 (\* 조례규칙표준안 20건 포함시 36건)

• **법률** : 6건(지방세3법 제 · 개정/ 3.31, 일부개정/ 12.27)

• **대통령령** : 6건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2호(9.20, 12.30)

• **행정안전부령** : 5건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12.24), 지방세법 시행규칙(2회, 12.24, 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2.24)

※ **자치단체 조례규칙표준안** 시달 : 20건

### III. 2011년 지방세 정책 방향

## 친서민 공정사회에 부응하는 선진 지방세제 구현

정책 방향	주요 정책 과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체계 일원화 및 감면심사 선진화</li> <li>○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방안 수립</li> <li>○ 지방소비세 확대 발전 방안 수립</li> <li>○ 지방세 정책연구역량 강화</li> </ul>
공정사회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세제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고오염시설 과제 강화</li> <li>○ 조세형평 기능 우수한 세액공제제도 도입</li> <li>○ 과세자료 제출·관리체계 구축</li> </ul>
친서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li> <li>○ 장애인용 자동차 세제지원제도 개선</li> <li>○ CD/ATM에서 카드로 지방세 조회납부 시행</li> </ul>

금년도 지방세 정책여건은 지방재정 건전성 및 자주재원 확보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지방세수는 경기회복 기조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의 노력으로 다소 증가될 전망이지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가 요구되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신세율 밸류, 자치단체의 과세 자율권 확대 등 다양한 지방세 확대 논의가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서민 지방세 지원, 공정사회 및 조세정의 구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세의 정책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지방세수 확충, 친환경 녹색세제 등 지방세 정책연구를 위한 지방세 정책 연구능력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지방세 정책 추진방향은 친서민 공정사회에 부응하는 선진 지방세제 구현을 정책목표

로 삼았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첫째,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둘째, 공정사회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세제 개편, 셋째, 친서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으로 큰 정책방향을 세웠다. 이하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지방세 감면 축소 추진, 선택적 과세권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방안 수립, 지방소비세 확대 발전 방안 수립, 지방세 정책연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세 감면체계 일원화 및 감면심사방식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조특법상 지방세 감면은 일몰시 감면기한을 종료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만약, 이관 없이 감면기한을 연장시에는 지방재정 보전대책 협의를 의무화하여 감면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심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비율 법정목표를 설정하고 감면을 요청하는 중앙부처의 감면액 보전방안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면심사 방식도 목적중심의 견별 수시심사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기 통합심사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분야의 장기화된 감면과 기득권화된 감면(부동산, 제조업, 민간사회단체 등)을 분석 정비하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친환경산업과 에너지사업 등 신성장산업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수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선택적 과세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특정세원은 골재채취, 해저자원, 심층수, 조력·화력 발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광행위는 박물관, 카지노 입장행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용행위는 공원이용, 공영주차장 이용 등을 검

토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열거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물건 및 행위의 유형만 규정하고, 구체적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일정은 상반기 중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2009년 9월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 마련시 주민세(소득할, 법인세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를 통합하여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다. 당초 부처 협의안대로 2013년까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위해 올해는 우선 일본, 북유럽 등 선진국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사례를 분석하고, 일부 제기될 수 있는 납세자 불편 및 징세비용 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원이양 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도입관련 중요한 과제는 전담공무원 양성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다수 양성할 계획이며 학계, 법조계, 세무사회 등 지방소득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자문그룹 운영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총리실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세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의 대표사례인 지방소비세 확대 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2.68조원이 징수되었고 올해 예상세수는 2.79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도 지방소비세의 조기정책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인 거주지 기준의 민간최종소비지출 대체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소비세 확대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 재원변동에 대한 재정조정 방안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효과를 분석하고 지역간 세원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은 지방세 정책연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정책연구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인식하에 전 자치단체의 동의로 지난해 연말 지방세연구원 설립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앞으로 설립될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 자치단체 공동 산하기관으로 설립되는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은 지방세발전기금을 통해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세 연구 분야는 일반행정 분야와는 차별된 전문성이 요구되며,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경제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유수 전문기관의 인력채용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3월중에 지방세연구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공정사회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세제개편

금년도 지방세제 개편 주요계획은 먼저 고위험 시설과 고오염 시설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지방세 과세 확대를 검토 할 계획이다. 현재 고층건물, 도시가스, 환경오염 유발시설 등은 재난발생시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재정부담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고위험시설 대상은 고층 건물, 도시가스(LNG) 등 사고발생 위험 및 사고예방과 처리 비용이 높은 시설이다. 현행 공동시설세의 중과구간을 세분화하고 중과세 비율도 차등할 계획이며 도시가스(LNG) 폭발, 배관 파손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또는 주민세 재산분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고오염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폐수 및 폐기물 배출업소<sup>1)</sup> 중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인 과세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은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도입 추진이다. 국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세액공제 방식을 다수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주로 세액감면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납세자의 다양한

1) 폐수 배출업소 총 47,155개, 폐기물 발생업소 총 93,394개

납세여건을 반영하기 어렵고 감면의 정책적 기능 수행과 조세형평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세도 납세자의 사회적 기여도와 지역투자 실적 등에 상응하여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익성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는 공제기준 및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창출 실적, 법인수익금의 사회복지사업 사용비율 등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세제지원 방식에 따른 지원효과를 감안,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 부여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방법을 국세 수준으로 체계화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과 관리방법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시 개선된 사항으로 먼저 자료제출 대상기관은 중앙부처·청(28), 지자체, 대법원·법원행정처, 공사·공단(9), 대한법무사협회 등 민간(2) 등 총 45개 기관이며, 제출자료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필자료 등 205개 자료(등록면허세 106, 취득세 46, 자동차세 6, 재산세 23, 주민세 13, 지방소득세 2, 지역자원시설세 3, 체납관련 6)이다. 자료제출 방식의 경우 정기분 전국적으로 내용·시기가 동일한 사안은(건축물 착공신고자료 등 34개 기관 총 149개자료) 행정안전부가 총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자치단체에 배분할 계획이다.

수시분은 체납자료 조회, 세무조사 등 수시로 과세자료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요구자료를 시도에서 취합 요구(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 등 22개기관 총 56개자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맞도록 지방세정보통신망 기능도 개편할 계획이다.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과세자료 보유기관의 전산시스템도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다.

### 3. 친서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올해 친서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근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활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익성과 국세 지원 현황(법인세 50% 지원)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선 검토 중인 내용은 일자리 제공 실적이 우수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이내에서 차등 감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지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감면차량 대차시 종전 자동차의 말소 또는 이전등록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처분기한을 6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외국인도 주민등록증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혼인)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세대원으로 인정되면 감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을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개별 수납계약 체결로 지방세 납부수단 및 납부대행기관 제한 등 납세자가 불편 초래하였고. 납세자가 종이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는 불편 및 지자체, 금융기관의 처리비용과 기간 과다 소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준비를 해 오고 있다. 납세자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 모든 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해진다. 전국 지자체와 전 금융회사가 일괄적으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세 수납업무를 전국 지자체 공동업무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수납처리를 위한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센터를 구축하여 세입 통합관리 및 수납자금의 지자체 배분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부과 · 납부 · 체납 정보의 일괄조회 및 수납정보의 실시간 조회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 IV. 맺음말

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구호로 활기찬 시장경제와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되는 겨울 날씨는 예년에 비해 한파가 지속되고 폭설도 자주 내려 지방행정 추진에 더없이 어려운 여건이다.

올해는 주요 선거가 없는 해이다. 정치 환경상, 행정 환경상 정책추진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서서히 날씨가 풀리고, 더불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이어서 국가경제가 곧바로 회복되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계획중인 지방세 정책과제를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올해는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함에 따라 미래지향적 지방세 정책연구과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전국 1만2천 세정가족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가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발전을 기대해 본다. ☺

